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3월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청소년기본법」에 의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·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어느 한쪽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(안 제4조)
- 나.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, 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(안 제6조 제1항)
- 다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(안 제6조 제2항)
- 라.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(안 제9조 제2항)

다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(안 제13조)

바.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(안 제1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:어르신청소년과장, 주소: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<연희동 168-6>, 우120-703, 전화 (02)330-1285, FAX (02) 330-1660, E-mail : okajeby@sd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

【<http://www.sdm.go.kr/>】의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